

독일의 입양법제 최근 동향

I. 서론

종래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제도는 가(家)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의 「민법」 개정을 통해 사후양자제도, 서양자(壻養子)제도 및 유언양자를 폐지하고, 2005년의 「민법」 개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면서, 가를 유지하기 위한 입양제도는 점차 자(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제도로 변모하여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크게 「민법」상의 일반양자와 친양자제도 및 요보호아동¹⁾을 대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²⁾ 이중 「민법」상의 일반양자제도에는 여전히 가의 유지를 위한 측면이 강하게 남아 있지

만, 「민법」상의 친양자제도 및 「입양특례법」에서의 양자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제도의 변화가 언제나 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자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입양아동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입양요건을 강화하였지만, 오히려 이런 제도로 인해 출생아를 유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입양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역효과를 빚고 있다. 또한 「민법」에서 일반양자제도 외에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의 복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종래의 「입양특례법」을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법체계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출산

- 1) 「입양특례법」 제1조는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호는 요보호아동을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4호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하고 있다.
- 2) 김유경,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면에 따르면,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발생규모는 1997~2009년 동안 9.2%의 증가율을 보인다.

시대를 맞아 국외입양을 지양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지만,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자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외국의 입양제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법제의 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이 글은 여러 선진외국의 입양제도 중 특히, 독일의 입양법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 입양법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독일민법」의 입양 관련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 하며, 이 외에 입양 관련 법률들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II. 독일의 입양법제

1. 개관

독일의 입양에 대한 기본법은 「독일민법」상의 입양(Annahme als Kind)제도이다. 이러한 「독일민법」상의 입양제도는 크게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제1741조-제1766조)과 성년자에 대

한 입양(제1767조-제1772조)으로 구분하여 규정되고 있다.⁴⁾

또한 약칭하여 「입양알선법(Adoptionvermittlungsgesetz: AdvermiG)」이라 불리는 「입양의 알선과 대리모의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역시 입양에 관한 중요 법률이다.

이외에 국제입양과 관련해서는 약칭하여 「입양협약시행법(Adoptions-Übereinkommens-Ausführungsgesetz: AdÜbAG)」이라 불리는 「양자의 보호와 국제입양의 공동조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하거협약의 시행을 위한 법률(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과 약칭하여 「입양의 효력법(Adoptionswirkungsgesetz: AdWirkG)」이라 불리는 「외국법에 따른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역시 입양 관련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최근 2013년 3월 19일 연방하원(Bundestag)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2013년 6

3)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강화로 오히려 입양이 감소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병주,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1집, 2013, 502면 이하.

4) 미성년자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상속이나 부양 등 재산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Frank(최봉경 번역), 입양제도는 필요한가?, 가족법연구 제22권 3호, 2008, 540면 참조.

월 7일 연방하원이 가결하고 동년 7월 5일 연방상원(Bundesrat)에서 승인한 「임산부의 지원 확대와 익명출산의 규정을 위한 법률(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이 2014년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 「독일민법」상의 입양제도

1) 미성년자 입양

(1) 양친

미성년자⁵⁾의 입양은 양자의 복리에 이바지하고 양친과 양자 사이에 친자관계(親子關係)가 발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허용될 수 있다(「독일민법」⁶⁾ 제1741조 제1항).

양친이 독신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자를 입양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입양하게 된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행위무능력자이거나 만 21세 미만이어서 양자를 입양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제1741조 제2항). 이에 비해 부부는 부부 모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양자를 입양하여야 한다(제1742조).

양친은 원칙적으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제1743조). 다만 부부의 공동입양에 있어서는

부부의 일방은 만 25세 이상이고 다른 일방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할 수 없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입양을 위해서는 양친이 적절한 기간 동안 양자가 될 자를 양육한 후 비로소 입양을 할 수 있다(제1744조). 또한 양친의 자녀와 입양될 양자의 이익이 상반되거나 양친의 자녀를 통해 입양될 양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단지 재산적 이익만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제1745조).

(2) 입양을 위한 의사표시

i) 양자의 의사표시

입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자가 될 자의 사전동의(Einwilligung)가 있어야 한다(제1746조). 다만 양자가 될 자가 행위무능력자이거나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통해 양자로 될 수 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언제나 양자가 될 자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Zustimmung)를 받아야 한다.

또한 양자가 될 자가 행위무능력자이거나 만 14세 미만인 경우, 양자가 될 자는 양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정법원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법정대리

5) 독일에서의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독일민법」 제2조 참조).

6) 이하의 “2. 「독일민법」상의 입양제도”에서 「독일민법」의 조문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명을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

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공증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양친과 양자가 될 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추인(Genehmigung)을 필요로 한다. 다만 입양이 독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추인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입양을 위해서는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사전동의도 필요하다(제1747조). 이러한 사전동의는 양자가 적어도 출생 후 8주가 지난 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비록 양친으로 될 자가 누군지 모르고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다만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들이 친권의 의사표시(Sorgeerklärung)를 하지 않은 경우, 부는 자의 출생 전에도 입양에 대한 사전동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사유⁷⁾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가 될 자의 청구를 받아 가정법원이 부모의 사전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제1748조).

ii) 혼인한 부부의 의사표시

양친 부모의 일방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제1749조).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친 부모 일방의 청구에 따라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양친 부모 다른 일방과 입양될 가족의 정당한 이익에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사전동의를 대체할 수 없다.

한편 혼인한 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배우자가 장기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거나 장기간 그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ii) 의사표시의 방법

양자(제1746조), 양자 부모(제1747조) 및 혼인한 부부(제1749조)의 사전동의는 가정법원에 표시되어야 한다(제1750조). 이러한 표시는 공정증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가정법원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전동의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며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양자가 될 자가 행위무능력자이거나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사전동의를 한 경우, 해당 양

7) 여기서의 일정한 사유로는 i) 부모가 지속적으로 그의 의무를 심히 위반하거나 그의 행동으로부터 양자를 방치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며, 또한 입양을 지체하는 것이 양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야기하는 경우, ii) 부모의 의무위반이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특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양자가 장기간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다만 지속적인 의무위반과 심한 의무위반이라는 양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모의 냉대의 경우에는 청소년청(Jugendamt)에서 의사표시의 대체 가능성에 관해서 고지하고 「사회법」 제8장에 있는 제51조 제2항의 조치에 따른 조언이 있었으며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계몽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없다. 또한 iii) 부모의 일방이 특히 중한 심리적, 정신적 질환이나 영혼적 장애로 인해 양자의 보호와 교육을 장기간 돌볼 수 없고, 또한 입양을 지체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 양자가 성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양자의 발전이 심히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도 그 부모 일방의 의사표시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iv) 양자의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 중에 있지 않으며 모친이 해당 양자의 친권(elterliche Sorge)을 행사하는 경우, 입양을 지체하게 되면 해당 양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야기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은 부의 사전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

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1746조 제2항, 제1750조 제2항).

또한 사전동의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없으며, 사전동의권자의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양자가 될 자가 행위무능력자이거나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만이 사전동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양자가 될 자가 스스로 사전동의를 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한편 입양의 청약(신청)이 철회되거나 이에 대한 승낙이 없는 경우 사전동의는 실효된다. 또한 입양될 양자가 부모의 사전동의의 효력발생 후 3년 내에 입양되지 않는 경우에 부모의 사전동의는 실효된다.

iv) 부모의 사전동의의 효력과 부양의무

부모의 일방이 입양에 대해 사전동의를 하면 그 부모의 친권은 정지되며, 해당 양자에 대한 면접교섭권(Befugnis zum persönlichen Umgang mit dem Kind)⁸⁾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751조). 그 대신 청소년청의 후견이 개시된다. 다만, 부모 중 사전동의를 한 일방 외의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거나 이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청의 후견이 개시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 중 일방의 사전동의

가 실효되면, 후견법원은 해당 양자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동의가 실효된 자에게 친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한편 양자의 부모가 사전동의를 하였고 양자가 입양을 위해 양친의 보호 하에 있게 되면, 양친이 될 자는 양자의 존속으로서의 친족관계에 따라(vor den Verwandten des Kindes) 곧 바로 해당 양자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v) 입양의 신청과 가정법원의 결정

입양은 양친이 될 자의 신청을 받아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제1752조). 여기서 양자가 될 자의 신청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대리에 의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은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3) 입양의 효력

부부가 양자를 입양하거나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양자를 입양한다면, 그 양자는 부부 공동의 양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한다 (제1754조). 그 밖의 경우에는 입양한 양친의 양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한다. 부부 공동의 양자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에게 친권이 있으며, 양친의 양자의 경우에는 양친에게 친권이 있다.

한편 입양이 되면, 입양된 자와 그의 자녀의 종전의 친족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와

8) 독일에서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인적 친권(Personensorge)과 재산에 대한 친권(Vermögenssorge)으로 분류된다(제1626조). 1998년 6월 30일까지의 「구 독일민법」은 이중 면접교섭권을 인적 친권을 상실한 부모에게 부여하였었다(「구 독일민법」 제1634조). 그러나 1998년 7월 1일부터 「구 독일민법」 제1634조는 삭제되었고, 이후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으로 개정되었다(제1684조 참조).

의무는 소멸된다(제1755조). 그러나 입양이 성립 전에 이미 존속하고 있는 청구권, 특히 연금, 고아연금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회귀적 급부 등에 대한 청구권은 입양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육청구권은 그러하지 않다. 또한 양친이 양자와 이촌 내지 삼촌의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에 있었던 경우, 양자와 양자의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양자의 부모와의 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와 의무에 한해 소멸된다(제1756조).

이 외에도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친의 성을 따른다(제1757조). 입양과 그 사정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은 특별한 공적 이익의 요청이 없는 한 양친과 양자의 동의 없이 공표되거나 탐문되어서는 안 된다(제1758조).

(4) 입양관계의 종료

입양관계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가정법원의 직권을 통해 종료할 수 있다(제1759조). 이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입양관계의 종료는 입양관계가 양친의 신청 없이, 양자의 사전동의 없이, 또는 필요한 부모의 사전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입양관계는 가정법원에 대한 신청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제1760조). 또한 양친의 신청, 양자의 사전동의, 또는 필요한 부모의 사전동의가 그 신청이나 사전동의 시무의식이나 정신질환 등 의사능력의 제한 등에 기초해 행해진 경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사전동의를 한 경우, 또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 등

의 사유가 있다면, 그 신청이나 사전동의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비록 그 신청이나 사전동의 없이 또는 그 효력이 없이 이루어진 입양관계 일지라도 입양에 대한 승낙의 선고 당시 또는 종료신청에 대한 결정 당시 그 신청이나 사전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입양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제1761조). 또한 입양관계의 종료에 대해 양친에게 우월한 이익이 있지 않는 한, 그 종료를 통해 양자의 복리가 심히 위태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입양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한편 양자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근거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입양관계를 직권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 중 일방이 타방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했던 경우, 일방 배우자와 양자의 입양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라 입양관계가 종료하면, 그 효력은 종료 시부터 발생한다(제1764조). 다만, 양친이나 양자가 입양관계의 종료를 신청하였지만 그 신청 후 사망하였고 이후 가정법원이 입양관계의 종료를 선고하였다면, 그 입양관계는 사망 이전에 종료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입양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입양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친족관계는 종료하며 그 친족관계로부터 파생하였던 권리와 의무 역시 소멸하게 된다. 그 대신 종래의 친가와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와 의무 역시 부활하지만, 친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양자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

정법원은 친부모에게 친권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견인이나 개호인(Pfleger)⁹⁾을 임명하여야 한다. 부부 모두와 입양관계가 존재하였지만 그 중 부부 일방과의 관계에서만 입양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친족관계의 소멸은 그 일방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고 다른 일방과의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종래의 친가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 않는다.

한편 입양의 종료와 함께 양자였던 자는 양가의 성을 사용할 수 없다(제1765조). 다만, 양친과 양자, 또는 양친과 양자의 자녀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양자관계는 종료되지만, 양자 및 양자의 자녀는 계속하여 양가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제1766조).

2) 성년자 입양

성년자는 입양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에 입양될 수 있다(제1767조). 특히, 양친과 양자 사이에 이미 부모와 자식의 관계(Eltern-Kind-Beziehungen)가 형성되어 있을 때 입양될 수 있다. 이러한 성년자의 입양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성년자 입양은 양친과 양자로 될 자의 신청을 받아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제1768조).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입양과는 달리 부부 공동에

의한 입양(제1742조), 견습기간(제1744조), 양친의 자녀와 입양될 양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등에서의 입양금지(제1745조), 입양을 위한 양자의 사전동의와 관련된 내용(제1746조) 및 양자로 될 자의 친부모의 사전동의와 관련된 내용(제1747조)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성년자 입양이 양친이 될 자나 양자가 될 자의 자녀의 우세한 이익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성년자 입양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제1748조).

한편 성년자 입양의 효과가 양친의 친족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제1749조). 즉, 양친의 배우자(Ehegatte)나 사실혼의 배우자(Lebenspartner)와 양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양자의 배우자나 사실혼의 배우자와 양친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양자와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입양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입양관계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친과 양자의 신청을 받아 가정법원이 그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제1763조). 그 밖에 미성년자 입양에 있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인한 입양관계의 종료에 대한 규정(제1760조)이 성년자 입양에 준용된다. 이러한 준용에 있어서 미성년자 입양에서의 양자의 사전승인에 관한 규정내용은 양자의 신청에 대체되어 적용된다.

9) 개호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를 대신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제1909조 참조).

한편 가정법원은 양친과 양자가 될 자의 신청을 받아 입양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입양의 효력을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규정에(제1754-제1756조) 따르도록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일정한 사유는 i) 양자의 미성년자인 형제자매가 이미 양친의 양자이거나 또는 동시에 입양되는 경우, ii) 양자가 이미 미성년자일 때부터 양친의 가정에 입주하고 있었던 경우, iii)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iv) 가정법원에 양친이 신청할 시점에는 양자가 아직 미성년자였던 경우이다. 그러나 양자의 친부모의 우세한 이익에 반하다면,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입양알선법」상의 입양제도

1) 연혁 및 체계

「입양알선법」은 1976년 7월 2일 제정되었으며, 현행 법률은 2008년 12월 10일에 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제1절 입양알선(Adoptionsvermittlung), 제2절 대리모(Ersatzmuttertum), 제3절 형벌과 과태료(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와 제4절 경과규정(Übergangsvorschrifte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입양과 관련된 제1절 입양알선에서는 입양알선(제1조), 입양알선기관(제2조), 국제입양알선(제2조a), 종사자의 인적·전문적 적합성(제3조), 입양알선기관의 승인(제4조), 알선

의 금지(제5조), 입양광고(제6조), 알선의 준비(제7조), 입양의 개시(제8조), 입양의 수행(제9조), 입양알선기관의 관할영역(제9조a), 알선문서(제9조b), 시행세칙(제9조c), 데이터보호(제9조d), 주 청소년청 중앙입양기관에 대한 보고(제10조), 주 청소년청 중앙입양기관의 임무(제11조), 주 청소년청 중앙입양기관의 설비(제13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입양알선의 의미

입양알선은 18세 미만의 아동과 입양을 원하는 자(Adoptionsbewerber: 입양희망자)를 소개하는 것이다. 입양알선은 아동의 입양의 기회를 소개하며 특히 아직 출산하지 않은 태아 역시 소개할 수 있다.

(2) 입양알선기관

알선은 청소년청과 주 청소년청의 관할에 속한다. 다만, 청소년청은 입양알선기관을 설치한 경우에 비로소 입양알선을 할 수 있다. 인접한 읍·면(Gemeinde)이나 군(kreise)은 주 청소년청 중앙 입양기관(Zentrale Adoptionsstelle des Landesjugendamtes)의 동의를 받아 공동의 입양알선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주 청소년청들 역시 공동의 중앙 입양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다만, 베를린(Berlin), 함부르크(Hamburg)와 자알란트(Saarland)에서는 주 청소년청이 청소년청 입양알선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신교 자선단체(Diakonische Werk der EKD), 천주교 자선단체(Deutschen Caritasverband), 노동자복지단체와 이들 단체들과 연결된 전문가 협회 및 그 밖에 국내에 소재지를 둔 조직의 중앙·지방기관 역시 주 청소년청 중앙 입양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입양알선을 할 수 있다.

(3) 국제입양알선

입양알선법은 입양아동이나 입양희망자가 통상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입양알선 개시 전 2년 내에 국내에 입국한 경우의 국제 입양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국제 입양알선에 대해서는 주 청소년청 중앙 입양기관, 주 청소년청 중앙 입양기관이 일정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별적 또는 일반적 활동을 허락한 청소년청의 입양알선기관, 허락(Zulassung)된 범위 내에서의 승인된 외국알선기관(Auslandsvermittlungsstelle), 연방중앙기관(Bundeszentralstelle)이 개별적 활동을 허락한 입양협약(Adoptionsübereinkommen)에서의 허락된 외국조직(eine ausländische zugelassene Organisation)에 그 권한이 있다. 이들 기관은 외국입양을 위한 연방중앙기관으로서의 연방법무부와 협업한다. 연방가족, 노령자, 여성과 청소년부는 연방법무부와 협의하고 연방상원 의원의 동의를 받아 연방중앙기관이 입양협약을 체결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입양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외국입양에 관련된 기관들은 그 입양알선의

경우에 일정한 정보를 연방중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일정한 정보에는 i) 입양된 아동, 그 아동의 부모 및 입양희망자의 신상(성명, 출생일, 출생지, 국적, 가족상황과 주소 또는 통상의 거소)과 입양절차, ii) 매년 국제 입양알선 분야에서 각 기관이 활동한 범위, 절차와 결과, 그리고 iii) 「입양협약시행법」 제4조와 제2항 제1문에 따른 임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적 알선에 관한 요청에 관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연방중앙기관은 통지된 위 i)에서의 정보를 중앙데이터로 저장한다. 이 데이터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개별적 알선을 위한 데이터는 그 통지가 도달된 때로부터 30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

(4) 종사자의 인적·전문적 적합성

입양알선은 이에 대한 인성, 교육 및 직업적 경험이 적합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입양알선기관은 최소한 2명의 전임 또는 파트타임의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알선과는 다른 임무에 주로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 청소년청 중앙 입양기관은 예외를 허락할 수 있다.

(5) 입양알선기관의 승인

입양알선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승인될 수 있다. 즉, i) 종사자의 인적·전문적 적합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ii) 특히 법적 책임자의 노동방법과

재정상황에 비추어 그 임무의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있으며, iii) 출연령(Abgabenordnung) 제51조부터 제68조의 의미에서 세금우대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이나 법인연합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이다.

국제입양알선을 위해서는 그 외에 하나 또는 다수의 국가로부터 아동의 입양알선을 위해 수여된 특별한 허가(Zulassung)를 필요로 한다. 이 허가를 받으면, “승인된 국제알선기관(anerkannte Auslandsvermittlungsstelle)”이라는 징표를 사용할 수 있다.

(6) 알선 및 광고의 금지

알선은 청소년청, 주 청소년청과 위 ‘2) 입양알선기관’에서 열거된 권한 있는 기관만이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입양을 알선할 수 없다. 다만, i) 입양희망자나 입양아동과 3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인 자 또는 ii) 입양알선기관이나 청소년청에 그 알선을 자체 없이 고지하였으며, 개별적으로 또한 무보수로 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시킨다는 것을 입증한 자는 예외로 한다.

한편, 대중적 표시, 특히 신문광고나 신문보도를 통해 입양아동이나 입양희망자를 모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i) 그 대중적 표시가 주소의 고지를 통해 표현된 입양알선기관이나 중앙 입양기관에 대한 제안이나 문의를 담고 있으며, ii) 그 표시에서 개인의 주소가 고지되어 있지 않다면 그 광고는 금지되지 않는다.

(7) 알선의 준비

입양알선기관이 아동을 위해 입양알선을 고려하게 되면, 그 기관은 알선을 준비하기 위해 자체 없이 입양희망자, 입양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조사한다. 이 경우에 특히 입양희망자가 입양아동의 인격과 그의 특별한 수요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입양아동으로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출생 이전이라도 입양희망자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입양희망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관할 입양알선기관은 다른 입양알선기관의 요청을 받아 그 입양희망자에 대한 유용한 조사내용을 양도할 수 있다.

(8) 입양의 개시와 수행 및 관할기관

입양희망자가 입양을 위해 적합한 자라는 것이 확정되면 해동 아동은 그 적응을 위해 입양희망자에게 보내져 양육하도록 한다. 입양알선기관은, 특히 해동 아동이 입양희망자에게 보내지기 전과 적응기간 동안에, 양친과 협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상세히 조언하고 원조하여야 한다.

청소년청은 특히 자신의 관할영역에서 입양알선의 준비와 입양수행에 관한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알선문서

모든 개별 알선행위에 관한 기록과 구비서류는 해당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해당 입양알선기관이 해산되면, 그 임무를 양수한 기관이나 해당 입양알선기관이 소재한 주 청소년청의 중앙 입양기관이 그 임무를 양수받는다.

알선문서가 입양아동의 출생과 생활사(生活史)에 관련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입양아동의 법정대리인이나 만 16세 이상의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청을 하여 전문가의 안내 하에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 관계인의 우세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이 금지된다.

(10) 주 청소년청 중앙입양기관의 임무 등
주 청소년청 중앙입양기관은 i) 입양아동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ii) 입양희망자나 입양아동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무국자인 경우, iii) 입양희망자나 입양아동이 본 법의 효력범위 외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iv) 그밖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히 전문적 조언을 통해 입양알선기관을 원조하여야 한다.

주 청소년청 중앙입양기관은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해 최소한 1명의 소아과 의사, 소아정신병 의사나 아동심리학 영역에서의 유경험자인 심리학자, 그리고 1명의 다년의 직업 경험이 있는 법률가 및 사회교육자나 사회운동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4. 국제입양

국제입양과 관련해서는 1993년 5월 29일 하거

협약(Haager Übereinkommen)의 시행을 위한 「입양협약시행법(Adoptionsübvereinkommens-Ausführungsgesetz: AdÜbAG)」과 외국법에 따른 「입양의 효력법(Adoptionswirkungsgesetz: AdWirkG)」이 특별법으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중 「입양협약시행법」은 제1절 개념정의, 관할과 절차, 제2절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국제입양알선, 제3절 입양관계의 성립이나 변동에 관한 증명서와 제4절의 시간적 적용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입양의 효력법」은 외국에서 결정되거나 외국법에 근거한 입양에 대해 규율하는 법으로서, 입양된 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그 구성체계는 적용범위(제1조), 승인과 효력의 확정(제2조), 변동의 진술(제3조), 신청의 지위: 기관력의 효력범위(제4조)와 관할 및 절차(제5조)로 구성되어 있다.

5. 최근의 입법 동향

독일은 최근 2013년 3월 19일 연방하원(Bundestag)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2013년 6월 7일 연방하원이 가결하고 동년 7월 5일 연방상원(Bundesrat)에서 승인한 「임산부의 지원 확대와 익명출산의 규정을 위한 법률(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이 2014년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임산부의 익명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출산 후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아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2010년 독일청소년기관의 연구보고 결과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1,000명의 아이가 익명으로 태어났으며 이중 대부분의 아이가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거나 익명으로 양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중에는 출생 후 곧 바로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아이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임산부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가 정규 의료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영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법은 제정되었다.

다만, 이 법은 독자적인 규정내용을 두고 있는 법은 아니며, 출생과 관련한 제반 법률의 개정사항들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예컨대 동법 제6조는 「독일민법」의 제1674조 다음에 제1674조a를 신설하고 제1747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는 것과 그 신설되는 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임산부의 지원 확대와 익명출산의 규정을 위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라 신설되는 「독일민법」 제1674조a는 ‘익명으로 출산되는 아동을 위한 모친의 친권 정지’라는 표제로 “「임신갈등법(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익명으로 출산되는 아동을 위해 모친의 친권은 정지한다. 모친의 친권은 모친이 가정법원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고지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가정법원이 확정한 경우에 부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의 지원 확대와 익명출산의 규정을 위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라 신설되는 「독일민법」 제1747조 제4항은 “「임신갈등법(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익명으로 출산되는 아동의 모친의 체류지는 그 모친이 가정법원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고지를 제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명이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입양에 관한 법제는 근본적으로 「민법」상의 입양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민법」에서 입양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입양특례법」 제9조는 양자가 될 자격을, 동법 제10조는 양친이 될 자격을 정하고 그 외에 입양의 성립요건 및 법률효과와 파양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 입양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독일민법」상의 입양으로 단일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과 유사한 독일법으로는 「입양알선법」이 있지만, 입양알선법은 입양의 요건이나 효과 등을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니며, 주로 입양알선과 관련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의 자격 및 권한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다. 종래 「우리 민법」에서의 입양제도가 주로 가(家)를

위한 입양에 대해서 규율하였던데 비해 「입양 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복리를 중요시하였던 점에서 양자의 구별이 뚜렷하였지만, 「우리 민법」의 개정을 통해 친양자제도가 신설되면서 「민법」 역시 양자의 복리를 중시하는 양자제도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입양특례법」에 독자적인 입양의 실체법적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의 중복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입양특례법」 제14조가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에서 친양자제도와 별도로 입양의 실체법적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입양특례법」은 독일의 「입양알선법」과 같이 입양기관의 자격 및 권한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입양특례법」 제1장 총칙, 제3장의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과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동법」 제2장의 입양의 요건 및 효력은 「민법」에서의 친양자제도에 흡수하여 규율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 최근 독일의 입양 관련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2014년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임산부의 지원 확대와 익명출산의 규정을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독자적인 법률이라기보다는 임산부의 지원 확대와 특히 익명출산의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종래의 출산 및 입양과 관련된 제반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그 개정 내지 신설 규정들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다만, 동법의 입법취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임산부의 익명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출산 후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아동을 보호할 목적이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출산아동의 유기 등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독일에서의 「임산부의 지원 확대와 익명출산의 규정을 위한 법률」을 참고하여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임 형 택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 김유경,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병주,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1집, 2013.

Frank(최봉경 번역), 입양제도는 필요한가?, 가족법연구 제22권 3호, 2008.

〈인터넷〉

<http://www.bmfsfj.de/BMFSFJ/gleichstellung, did=199392.html>.

<http://www.bmfsfj.de/BMFSFJ/freiwilliges-engagement,did=187632.html>.

<http://www.buzer.de/gesetz/10907/index.htm>.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ad_bag/gesamt.pdf.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ad_wirkg/gesamt.pdf.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advermig_1976/gesamt.pdf.